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입장권등 부정판매 금지 행위 확대 등〉

- 이춘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928호)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576호)
-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674호)

2024. 1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5
1. 입장권등 부정판매의 범위 확대(이춘석·조계원·박수영의원안)	5
2. 입장권등 부정판매 신고기관 지정(박수영의원안)	11
3. 입장권등 부정판매의 벌칙 상향(이춘석·조계원·박수영의원안)	13

I . 제안경위

1. 이춘석의원안

가. 발 의 자: 이춘석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2024. 8. 19.

다. 회 부 일: 2024. 8. 20.

2. 조계원의원안

가. 발 의 자: 조계원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2024. 10. 7.

다. 회 부 일: 2024. 10. 8.

3. 박수영의원안

가. 발 의 자: 박수영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2024. 10. 11.

다. 회 부 일: 2024. 10.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이춘석의원안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연 입장권 등을 대량 구매하고, 웃돈을 받고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특히, 과거 암표 매매가 현장에서 이뤄졌던 것에서 더 나아가 현재는 중고사이트 등 온라인으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구매한 입장권은 웃돈을 받고 판매해도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액이 과다한 경우 제재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건전하게 공연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2. 조계원의원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가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공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모든 온·오프라인상 부정판매 행위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그 처벌수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현행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제40조제1호 및 제42조의2 신설 등).

3. 박수영의원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장기간 침체했던 공연업계가 최근 관람객의 증가로 활기를 되찾고 있으나, 인기 공연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증가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가 온·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같은 부정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부정판매 수익의 몰수·추징 및 입장권 등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2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입장권등 부정판매의 가격 기준 변경 및 금지 범위 확대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의 개념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알선하는 것’에서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를 넘은 금액으로 판매·알선하는 것’으로 하여 부정판매의 가격 기준을 변경(박수영의원안)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등 부정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이춘석·조계원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 ----- ----- ----- ----- ----- ----- ----- -----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장권등을----- ----- ----- ----- ----- ----- --. ② -----입장권등----- ----- -----.
---	---

나. 검토의견

현행법¹⁾ 제4조의2제1항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 1)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로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정판매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또한, 동조 제2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즉 온라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 조항은 2023년 3월에 신설되었음.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금지하는 현행 조항의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수사 기관이 입증하지 못하면 부정판매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없으며, 보안 조치를 우회한 사전 접속 등 부정판매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어 현행 조항을 개정할 필요성²⁾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경우를 부정판매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연에 따라 할인 적용 수단이 다양하게 제공되어 있어 실제 구입 가격이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정판매 단속·제재 시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2)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공연 입장권등을 부정판매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를 금지했던 현행법의 금지행위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 수단과 관계없이 모든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며, 박수영의원안의 경우 추가적으로 부정판매의 기준을 판매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압표 신고계시판 건수가 2020년 359건에서 2023년 2,161건으로 증가³⁾하는 등 입장권등 부정판매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아이디 옮기기’, ‘대리 티켓팅’⁴⁾ 등 압표 거래 수법도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부정판매를 근절하여 건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입장권등 부정판매 금지행위의 범위를 개정안과 같이 확대할 경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에서의 압표 거래는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압표 거래까지 「공연법」에 따른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데, 오프라인에서의 압표 거래는 「경범죄처벌법」⁵⁾에 근거하여 20만원

3)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압표 신고계시판은 신고된 압표 의심 사례를 티켓 예매처에 송부하여 소명요청 및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압표 신고 현황]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8.
신고건수	359건	785건	4,224건	2,161건	1,364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4) 대리 티켓팅이란 압표 거래 업체가 구매자의 아이디 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받아 구매자의 계정으로 직접 예매를 해주는 방식이고, 아이디 옮기기란 이미 압표 거래 업체가 확보한 입장권 등을 취소함과 동시에 구매자의 계정으로 예매하는 방식을 의미함.

5)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개정안에 따라 온·오프라인의 구별 없이 암표 거래를 금지·처벌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과 「공연법」 중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 혼란이 생길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공연법」에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암표 거래에 대해서만 그 수단과 관계 없이 금지하는 것으로 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암표 거래를 분리하여 규정하거나, 또는 온·오프라인에서의 암표 거래 행위를 포괄하여 「공연법」에서 금지하도록 할 경우⁶⁾ 「경범죄 처벌법」의 개정이 수반⁷⁾되어야 할 것으로 봄.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오프라인 암표 매매를 금지하는 「경범죄 처벌법」이 존재하고 그 처벌 수위도 「공연법」과 상이하므로, 매크로 프로그램이라는 수단의 제약 없이 ‘온라인 암표 매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참고로,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하게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매매를 금지하려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프로스포츠 경기),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옷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6) 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등 다수의 국가에서 티켓 판매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규정하여 액면가를 초과하는 티켓 재판매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음(참고자료 1).

7) 현행 「경범죄 처벌법」이 1983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정보통신망이 보편화된 이후에도 개정이 되지 않아 온라인에서의 암표 매매에 대해서는 적절히 규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관련하여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암표매매 행위를 처벌하려는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410호)이 제안되었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스포츠 경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화상영관),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수 법률안이 제안되었음.

[암표 매매 관련 유사 법률안 발의 현황]

법률안명	제안자	주요 내용	제안일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2024.8.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의원 등 13인		2024.1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2024.10.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3인		2024.10.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2024.1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 무관 영화 입장권·관람권 등 부정판매 금지 등	2024.11.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스포츠 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등 암표판매 금지 등	2024.10.18.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1인		2024.11.6.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온·오프라인 불문 암표매매 행위 처벌	2024.9.2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기차 승차권 등의 암표 판매 금지 등	2024.11.6.

2. 입장권등 부정판매 신고기관 지정(박수영의원안)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입장권등 부정판매와 관련된 불법 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는 신고기관을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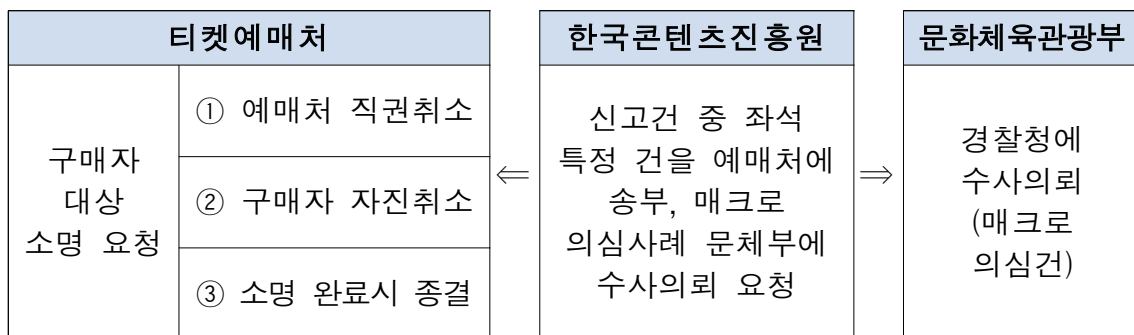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박수영의원안
<u><신 설></u>	<u>제4조의3(입장권등 부정판매 신고기관 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u> <u>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③ 그 밖에 신고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해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4조의3(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생략)</u>	<u>제4조의4(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현행 제4조의3과 같음)</u>

나. 검토의견

현재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0년부터 대중문화예술분야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공연 분야의 온라인 암표를 모니터링하고 신고계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된 암표 의심사례에 대해 티켓예매처와 협조하여 소명을 요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음.

[암표 신고 사건 처리절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불법행위 신고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부정판매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기술적인 판매 수법도 다양해짐에 따라 부정판매의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부정판매 신고를 전담하여 접수·처리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봄.

3. 입장권등 부정판매의 벌칙 상향 및 몰수·추징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입장권등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계원·박수영의원안)하려는 것으로,

이춘석의원안은 입장권등 부정판매를 통해 얻은 이득액에 따라 이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득액이 5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득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조계원·박수영의원안의 경우 입장권등 부정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이춘석의원안	조계원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 ----- ----- ----- ----- -----.	제40조(벌칙) ---- ----- ----- ----- ----- -----.	제40조(벌칙) ---- ----- ----- ----- ----- -----.

<u><신 설></u> 1. ~ 6. (생략)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2. ~ 6. (생략)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1천만원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 2. ~ 7.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41조(벌칙) ---- ----- ----- ----- ----- ----- -----. 1. -----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2. ~ 6. (현행과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2. ~ 7.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41조(벌칙) ---- ----- ----- ----- ----- ----- -----. <u><삭 제></u> 2. ~ 6. (현행과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2. ~ 7.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41조(벌칙) ---- ----- ----- ----- ----- -----. <u><삭 제></u> 2. ~ 6. (현행과
---	---	---	---

략) <신 설>	같음)	같음) 제42조의2(몰수·추징) 제40조제1호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같음) 제42조의2(몰수·추징) 제40조제1호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43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신 설>	제43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500만원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제43조(과태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과태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u>취득하게 한</u> <u>자</u>		
<u>2.</u> ~ <u>6.</u> (생략)	<u>3.</u> ~ <u>7.</u> (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100만원 이상의 고가로 암표가 거래되어 암표 판매로 얻는 이득액의 규모가 수억원에 이르는 등⁹⁾ 거래액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 기존의 벌칙 규정이 암표 거래로 얻는 이득에 비해 적어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8)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9) 김주원 기자, “임영웅·아이유 티켓 팔아요”...암표 사기로 6억원 챙긴 30대 실형’, 매일신문, 2024.1.16.,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011619054749618>
이유진 기자, ‘변우석 표 30배 폭리, 뮤지컬 암표로 1억 수익...‘티켓 되팔이’들 무더기 검거’, 한국일보, 2024.10.1.<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0112360003820?did=NA>

이에 개정안은 입장권등 부정판매에 대한 벌칙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얻은 이득액에 대하여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장권등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부정판매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이춘석의원안의 경우 부정판매로 얻은 이득액에 따라서 벌칙의 정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이득액을 기준으로 형사처벌 여부와 법정형을 달리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법관의 양형재량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379

참고

암표 거래 관련 해외 입법례

국가	재 판매 허용 여부	규제 대상	위반 시 처벌
일본	금지	액면가 이상의 티켓 재 판매와 재 판매 목적의 티켓 구매 행위 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벨기에	금지	- 최초 판매가 이상으로 티켓을 재 판매 하는 행위 금지 - 티켓 구입 후 본인만 입장 가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만 유로 이하 벌금
프랑스	허용	제작자·권리자의 승인 없는 상습적인 티켓 판매 및 판매 제공 규제	1만5천유로 이하의 벌금 부과, 재범 시 3만유로 이하의 벌금
미국	허용	- 티켓 구매 시스템의 보안 조치, 접근 통제 시스템 등을 우회하는 행위 - 불법 우회를 통해 취득된 티켓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행위 * 온라인을 통한 모든 티켓 재 판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	1,500달러 이하의 벌금, 재범 시 5,000달러 이하의 벌금
미국 (뉴욕주)	허용	티켓 구매 소프트웨어(매크로 프로그램 등)를 이용한 티켓 구매 및 재 판매 금지	티켓 구매 프로그램을 통한 구매 및 재 판매 시 1,500달러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수익 몰수
캐나다 (온타리오주)	허용	- 재 판매의 경우 티켓 액면가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보안 조치를 우회하는 티켓 구매 소프트웨어(매크로 프로그램 등)를 사용· 판매하거나 이를 통해 취득한 티켓을 판매하는 행위 금지	- 5만 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 티켓사업자나 구매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탈리아	금지	액면가 이상의 상업적 목적의 재 판매 또는 재 판매 게시 금지	18만 유로 이하의 벌금 부과
노르웨이	금지	액면가 이상의 티켓 재 판매	처벌 규정 미비
폴란드	금지	액면가 이상의 티켓 재 판매	징역(2년 이하)
스페인	허용	승인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오프라인 재 판매 금지 *온라인을 통한 재 판매 허용	-
독일	허용	티켓 약관에 액면가 25% 이상의 재 판매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 가격 이상의 재 판매 금지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